

■ 용어의 정의

(서브노트 3쪽)

(1) 상속 : 민법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① 유증

②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③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등

④ 유언대용신탁(∴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

* 유언대용신탁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사례) 甲이 생전에는 상가의 임대료 수익을 본인이 수령하고, 甲 사망 이후 甲의 자녀에게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신탁 설정하는 경우
⇒ 甲사망시 : 자녀에게 상속세 과세(甲의 상속재산에 포함)

■ 용어의 정의

(서브노트 3쪽)

(1) 상속 : 민법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④ 유언대용신탁(∴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

* 유언대용신탁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⑤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사례) 甲이 생전에는 상가의 임대료를 본인이 수령하고,
甲 사망 이후부터 甲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甲의 배우자가 임대료를 수령하며,
甲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甲의 자녀가 상가 임대료를 수령하도록 신탁 설정하는 경우
⇒ 甲사망시 : 배우자에게 상속세 과세
甲의 배우자 사망시 : 자녀에게 상속세 과세(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 용어의 정의

(서브노트 3쪽)

(2)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3)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 용어의 정의

(서브노트 4쪽)

(4) 상속인

민법에 따른 상속인(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

* 민법상 법정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와 동순위)

-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수익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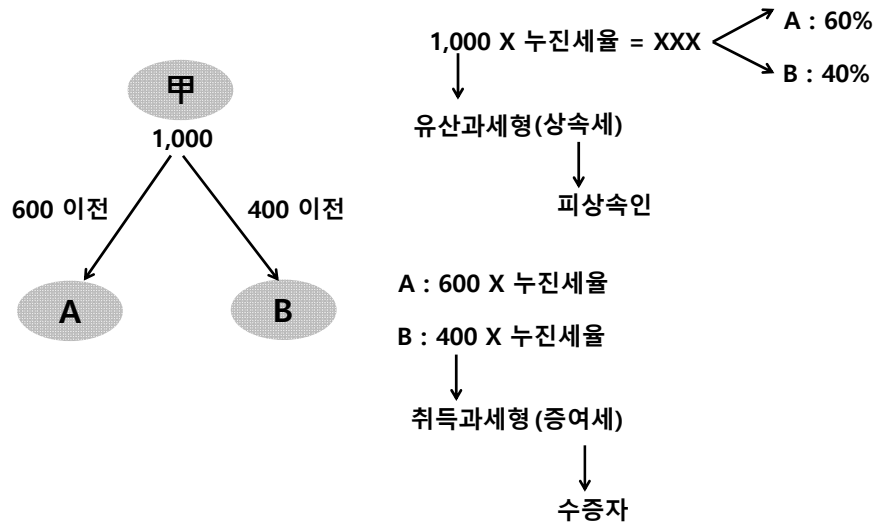
- ① 유증을 받은 자
②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③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8) 수증자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비영리법인 포함, 영리법인 제외)

■ 상속세의 과세유형

(서브노트 4쪽)



■ 무상취득자에 따른 과세체계

(서브노트 5쪽)

무상취득자	과세대상 세목
법인 [영 리 법 인 비영리법인	법인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개인 [사업 관련 사업 무관	사업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서브노트 5쪽)

- 상속재산의 개념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다음의 물건과 권리 포함

- 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 인정상여 : 포함 X / 배당 · 무상주 받을 권리 : 포함 O

- 상속세의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서브노트 5쪽)

- 납세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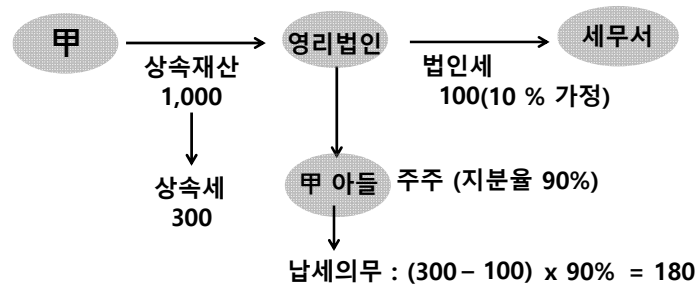
-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영리법인 제외 → 사전증여재산 포함

- ② 수유자가 영리법인 +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이 납세의무

(영리법인 상속재산 상속세 - 영리법인의 상속재산 × 10%) × 상속인과 그 비속의 지분율



■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서브노트 6쪽)

-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사전증여재산 포함)

- 부채총액
- 상속세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상속세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의 과세관할

(서브노트 6쪽)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 1.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이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 2.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 상속세의 계산구조

(서브노트 6쪽)

- 총상속재산가액 : ① 상속재산 ② 의제상속재산 ③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 불산입
 - 과세가액 공제액 : ① 공과금 ② 장례비 ③ 채무
 -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① 인적공제 ② 물적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X 세율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 총상속재산가액

(서브노트 7쪽)

- 의제상속재산가액

(1) 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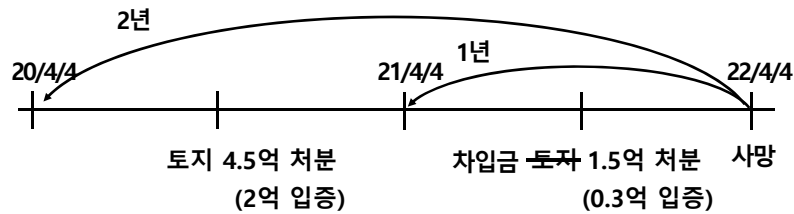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것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
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적용)

$$* \text{상속재산} = \text{보험금} \times \frac{\text{피상속인 부담 보험료}}{\text{납입 보험료 합계액}}$$

■ 총상속재산가액

(서브노트 8쪽)

- 추정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 6억 - 2.3억 - 1.2억(6억X20%) = 2.5억

추정상속가액 없음 (금액 미달)

■ 상속세 비과세

(서브노트 8쪽)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법소정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쟁 또는 공무수행 중의 부상 등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기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을 한 재산
- ②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와 당해 문화재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 ③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 ⑤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 등을 한 재산
- ⑥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
 - a. 분묘에 속한 9,900m² 이내의 금양임야
 - b. 분묘에 속한 1,980m² 이내의 묘토인 농지
 - c. 족보와 제구

2억 한도
1천만원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서브노트 9쪽)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

■ 과세가액 공제액

(서브노트 9쪽)

(1) 공과금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
(피상속인 귀책사유 포함, 상속인 귀책사유 제외)

(2) 장례비 = ① + ② (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장례비공제 불가)

① 일반 장례비: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② 봉안시설, 자연장지 : 최대 500만원

장례비 12 (봉안시설 8 포함) : 일반 4 → 5
 봉안 8 → 5
 10

장례비 12 (봉안시설 4 포함): 일반 8 → 8
 봉안 4 → 4
 12

장례비 없음 : 일반 0 $\longrightarrow$ 5

■ 과세가액 공제액

(서브노트 10쪽)

(1) 공과금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
(피상속인 귀책사유 포함, 상속인 귀책사유 제외)

(2) 장례비 = ① + ②

- ① 일반 장례비: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② 봉안시설, 자연장지: 최대 500만원

(3)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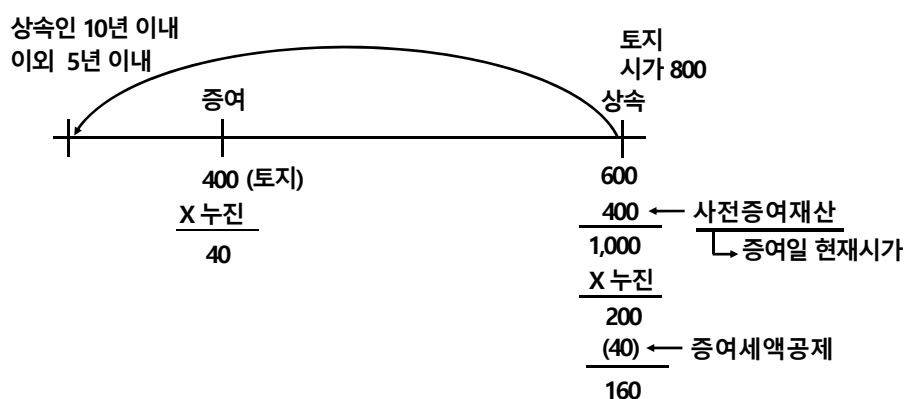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
(보증채무, 연대채무, 증여채무 포함)

* 다음의 채무는 제외

1. 가공채무 : 국가 · 지자체 · 금융회사 아닌 자에 대한 채무 +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
2. 증여채무
 - ① 상속인 증여채무 + 10년 이내
 - ② 상속인 외 증여채무 + 5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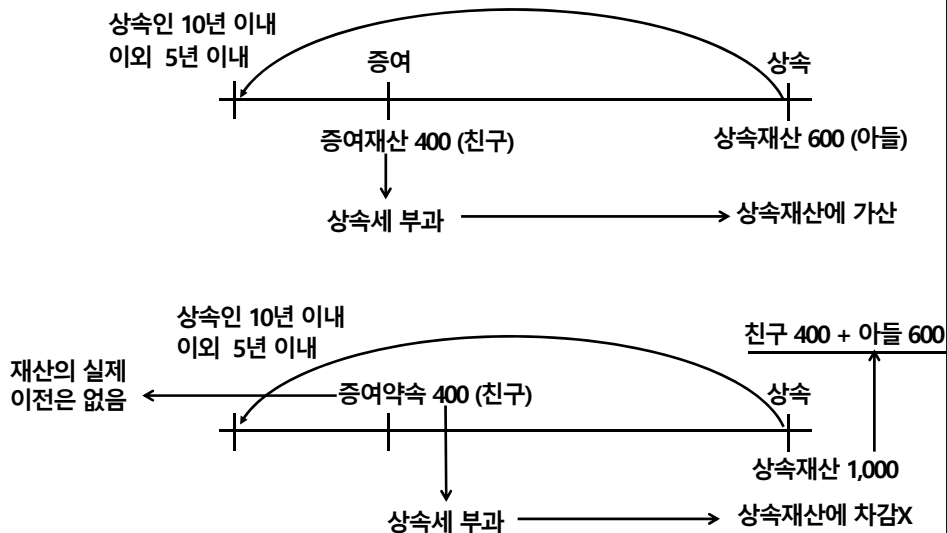
■ 사전 증여재산

(서브노트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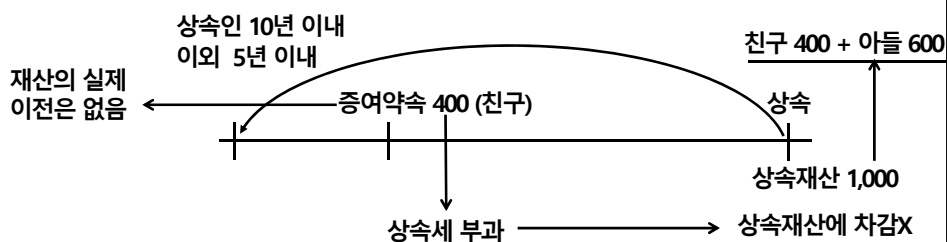


* 사전 증여재산가액 제외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

■ 사전 증여재산 가산 및 증여채무 미차감의 이해 (서브노트 11쪽)



■ 사전 증여재산 가산 및 증여채무 미차감의 이해 (서브노트 11쪽)



(서브노트 3쪽)

②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상속세 부과

■ 과세가액공제액 관련 유의사항

(서브노트 10쪽)

과세가액공제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총상속재산가액	1,000
- 비과세 / 불산입	(0)
- 과세가액 공제액	(1,200)
+ 사전증여재산	600
상속세 과세가액	400 600

■ 인적공제

(서브노트 12쪽)

1. Max
- (1) 기초공제(2억) + 기타인적공제
비거주자도 가능
 - (2) 일괄공제 (5억)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미적용

14세 4개월 → 19세
↓
4년 8개월
↓
5년

과표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없는 경우 일괄공제만 적용

배우자 제외

* 기타
인적공제

- ① 자녀 (태아 포함) : 인당 5천만원
 - ②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인당 5천만원
 - ③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태아 포함) : 1년 1천만원 (~19세까지)
 - ④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년 1천만원 (기대여명년수)
- 배우자 포함
존속(배우자 존속 포함) / 비속 / 형제자매
1년 미만은 1년

2. 배우자 상속공제 (5억 ~ 30억)

■ 인적공제

(서브노트 12쪽)

- 인적공제의 최소한

1. 배우자 + 자녀 : 5억(배우자) + 5억(일괄) = 10억
2. X + 자녀 : 0(배우자) + 5억(일괄) = 5억
3. 배우자 + X : 5억(배우자) + 2억(기초) = 7억

■ 인적공제

(서브노트 12쪽)

1. Max
- (1) 기초공제(2억) + 기타인적공제
비거주자도 가능
 - (2) 일괄공제 (5억)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미적용 배우자 제외

- * 기타 인적공제
- ① 자녀(태아 포함) : 인당 5천만원
 - ②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인당 5천만원
 - ③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포함) : 1년 1천만원 (~19세까지)
 - ④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년 1천만원 (기대여명년수)
- 배우자 포함
존속(배우자 존속 포함) / 비속 / 형제자매
- 1년 미만은 1년

2. 배우자 상속공제 (5억 ~ 30억)
: Min (①, ②)

-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② 한도

배우자상속재산 :	10억	10억	50억
한도 :	8억	4억	40억
	↓	↓	↓
공제액 :	8억	5억	3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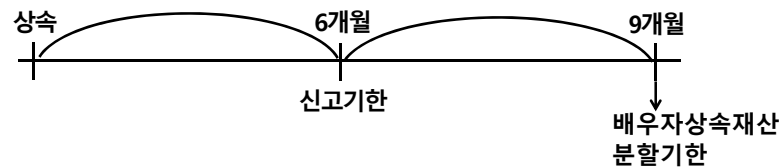
■ 인적공제

(서브노트 14쪽)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한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②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연장

- a. 소송, 심판청구 →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 b. 그 외 부득이한 사유 → 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③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

■ 물적공제

(서브노트 15쪽)

- 기업상속공제

1. 기업상속공제 : Min[①, ②]

- ① 기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② 한도

- a.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b.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 c.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2. 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직전 3개년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3. 기업상속재산가액

- a.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b.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times (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

■ 물적공제

(서브노트 16쪽)

- 영농상속공제

1. 공제액: Min[①, ②]

① 영농상속(양축·양어·영림상속 포함) 재산가액

② 한도 : 30억

*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물적공제

(서브노트 16쪽)

- 기업(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법소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기업상속공제>

- ① 해당 기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등

<영농상속공제>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물적공제

(서브노트 17쪽)

- 금융재산 상속공제

$$2\text{천만원} \leq \text{순금융재산} \times 20\% \leq 2\text{억}$$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기관차입금

- ① 포함 : 예금,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채권, 보험금, 금전신탁재산
 ② 제외 : 퇴직금, 최대주주 주식, 현금,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

- ① 과세가액공제
 ② 추정상속재산
 ③ 금융재산상속공제
 ④ 동거주택상속공제

CASE 1	CASE 2	순금융재산	공제액
예금 500	예금 500 + 예금 500	10	20 10
↓	차입금 500	20	20
500 X 20%	↓	50	20
	(1,000 - 500) X 20%	100	20
		500	100
		2,000	200

■ 물적공제

(서브노트 18쪽)

- 동거주택상속공제

1. 공제액 : Min[①, ②]

- ① (상속주택가액 -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 100%
 ② 한도 : 6억

2. 요건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상속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 비과세 요건 충족
 ③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 물적공제

(서브노트 19쪽)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서브노트 19쪽)

: 상속인이 지금 상속받은 재산만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세부담 완화 목적



사전증여재산은 공제 불가 → 누진세율 회피를 위하여 과세하는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과세표준)

상속공제 종합한도

* 사전증여재산의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사전증여재산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서브노트 20쪽)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
: 500만원 한도(평가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공제 적용)
-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 500만원 한도
- (3) 평가심의위원회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수수료
: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서브노트 21쪽)

- 상속세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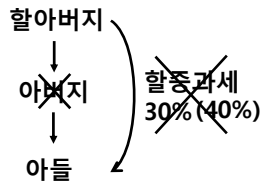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산출세액

(서브노트 21쪽)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① 자녀아닌 직계비속(손자 등)
- ② 미성년자
- ③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20억원 초과

$$\text{할증과세액} =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세대를 건너뛴 상속 · 유증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 \times 30\%(40\%)$$

■ 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징수유예

(서브노트 21쪽)

- 상속세액의 징수유예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 ① 문화재자료등 : 문화재자료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해당 문화재자료 또는 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② 박물관자료등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 ③ 국가지정문화재등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징수유예세액의 추징

-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취소·폐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서 제외 등의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

■ 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징수유예

(서브노트 22쪽)

- 상속세액의 징수유예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 ① 문화재자료등 : 문화재자료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해당 문화재자료 또는 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② 박물관자료등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 ③ 국가지정문화재등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납세담보의 제공

- ①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세액공제

(서브노트 22쪽)

-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증여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a.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b.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외국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세액공제

(서브노트 23쪽)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

$$\text{신고세액공제액} = \left[\begin{array}{l} \text{상속세산출세액} \\ \text{(할증과세액 포함)} \end{array} - \begin{array}{l} \text{지정문화재등} \\ \text{징수유예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공제·감면} \\ \text{세액} \end{array} \right] \times 3\%$$

■ 상속세 납세절차

(서브노트 24쪽)

-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의 자진납부

①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세액, 연부연납 신청금액, 납부유예 신청금액 및 물납 신청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세의 분납 (1천만원 초과, 2개월 이내, 연부연납 적용시는 불가)

2천만원 이하 : 납부할 금액 - 1천만원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금액 x 50%) 이하

■ 연부연납

(서브노트 24쪽)

- 연부연납의 요건

- ①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② 담보제공
- ③ 납세의무자 신청 + 세무서장 허가 → 금전, 법 소정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납세보증서 담보제공 시 신청과 함께 허가

- 연부연납의 신청

다음의 기한 이내에 신청서 제출

- (1) 상속세 신고(수정신고, 기한후신고 포함)하는 경우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
 - (2)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
- * 신청서 제출기한은 물납(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포함)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연부연납

(서브노트 25쪽)

- 연부연납 기간

- (1) 일반적인 경우 : 허가일로부터 10년
- (2) 기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법소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법소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

$$\text{- 연부연납 금액} = \frac{\text{연부연납대상금액}}{\text{연부연납기간}+1} = \frac{5,000\text{만원}}{3+1} = 1,250\text{만원} > 1,000\text{만원}$$

↓
1천만원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 정해야 함

(사례) 납부액 5,000만원인 경우 연부연납 기간? → 최대 3년

-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시 가산금 부과(분납은 없음)

■ 물납

(서브노트 25쪽)

- 물납의 요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

-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할 것

↓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③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사전증여재산 제외)의 가액을 초과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
-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②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③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④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물납

(서브노트 26쪽)

-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 한도 : Min[①, ②]

- ① 물납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납부세액
- 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 - 상장 유가증권(처분 제한된 것 제외)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 물납의 제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가액 제외)

■ 물납

(서브노트 26쪽)

- 물납 총당순서

- a. 국채 및 공채
- b. 상장된 유가증권(a 제외)
- c. 국내소재 부동산(f 제외)
- d. 유가증권(a, b, e 제외)
- e. 비상장주식
- f.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물납에 총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
(사전증여재산의 수납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서브노트 27쪽)

- 물납요건

-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②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사전증여재산액 제외)의 가액을 초과할 것

- 물납대상 문화재 등의 범위

물납대상 문화재 등(부동산은 제외)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 ②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서브노트 27쪽)

- 납부유예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 ①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을 상속받았을 것
- ② 가업상속공제(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허용함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 추정사유

-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④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서브노트 28쪽)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세무서장 등은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 터 5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등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서브노트 29쪽)

- 경정 등의 청구특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법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 증여세의 개념

(서브노트 30쪽)

- 증여의 개념 (서브노트 3쪽)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증여재산의 개념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③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서브노트 31쪽)

1. 최초 협의분할 → 증여 X

2. 재분할

① 상속세신고기한 이내 : 증여 X

② 상속세신고기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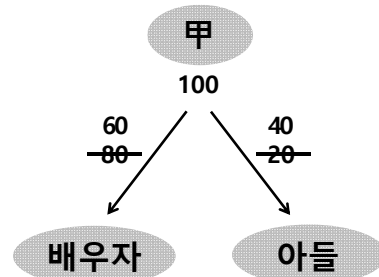
a. 원칙: 증여 O

b. 정당한 사유 有: 증여 X

→ i) 소송으로 인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

i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iii) 물납하기 위하여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
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서브노트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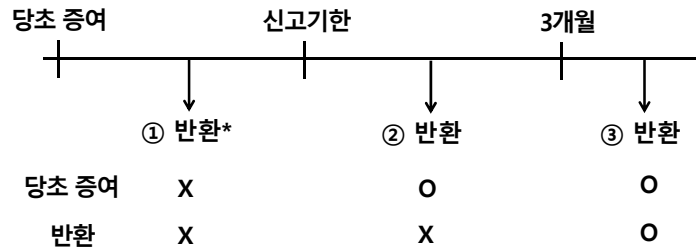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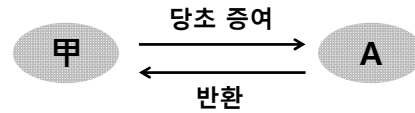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
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
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과세여부

(서브노트 31쪽)

금전은 제외



*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증여세의 납부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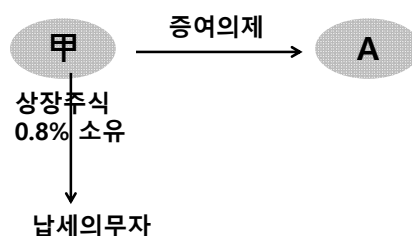
(서브노트 32쪽)

수증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

- ① 수증자가 거주자(비영리내국법인 포함)인 경우 : 모든 증여재산
-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

주식 0.5% 甲취득 + A명의 (조세 회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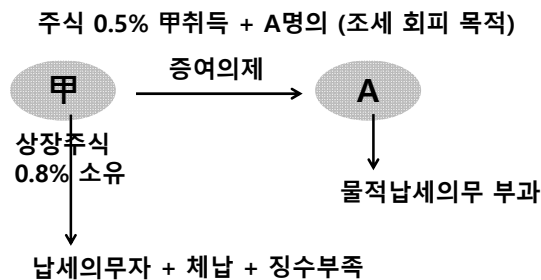


■ 증여세의 납부의무

(서브노트 32쪽)

-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

(서브노트 58쪽)

- 의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 적용배제

- ① 조세(국세·지방세 및 관세를 말한다)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③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 증여세의 납부의무

(서브노트 32쪽)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 ①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증여재산이 명백하지 않음)

1.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아 발생하는 이익
2.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3. 변칙적 증여거래에 해당하는 이익의 증여(신탁이익, 보험금 제외)
4. 증여의제
5.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증여세의 납부의무 기타

(서브노트 33쪽)

-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법소정 증여 + 수증자가 납부능력 상실 + 강제징수 하여도 조세확보 곤란한 경우



- a.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b.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c.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d.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여세의 납부의무 기타

(서브노트 33쪽)

- 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 감면되는 경우 포함)
- ②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 a.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 b. a 이외의 경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증여세의 납부의무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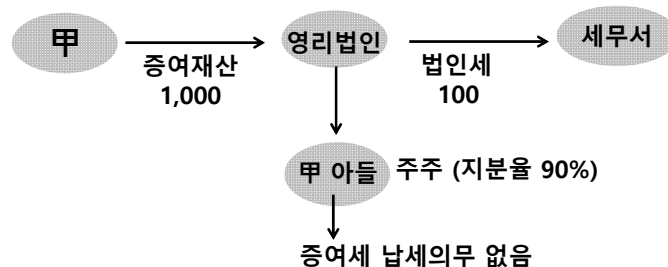
(서브노트 33쪽)

- ③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영리법인 주주의 납세의무

원칙 : 없음

예외 : 있음

- a.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b.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c. 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증여세의 과세관할

(서브노트 34쪽)

수증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

*1.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경우

-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②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2.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 ①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②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합병·증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 적용시

■ 증여세의 계산구조

(서브노트 34쪽)

$$\begin{array}{l}
 \text{증여재산가액} \\
 - \text{비과세 / 불산입} \\
 - \text{부담부증여채무} \\
 + \text{사전증여재산} \\
 \hline
 \text{증여세 과세가액} \\
 - \text{증여공제} \\
 - \text{감정평가수수료공제} \\
 \hline
 \text{증여세 과세표준} \\
 \times \text{세율} \\
 \hline
 \text{산출세액} \\
 - \text{기납부세액공제} \\
 - \text{신고세액공제} \\
 - \text{....}
 \end{array}$$

■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서브노트 33쪽)

-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 (2) 증여할 목적하에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또는 수증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
: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 ①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
 - ②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③ 공유물의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 ④ 사업의 인가,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 : 해당 인가, 허가일
 - ⑤ 주식 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 ⑥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 보험사고 발생일
 - ⑦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 증여세 비과세

(서브노트 33쪽)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③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 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 소정 항목
- ⑥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⑧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 ⑨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 ⑩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서브노트 34쪽)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서브노트 34쪽)

(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자익신탁의 경우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법소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② 타익신탁의 경우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법소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

③ 한도

자익신탁의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 : 5억원 한도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서브노트 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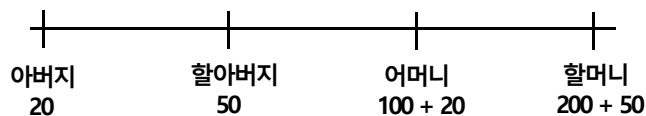
- 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을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②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배우자·직계존비속간 양도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사전증여재산)

(서브노트 36쪽)

- 사전증여재산 합산요건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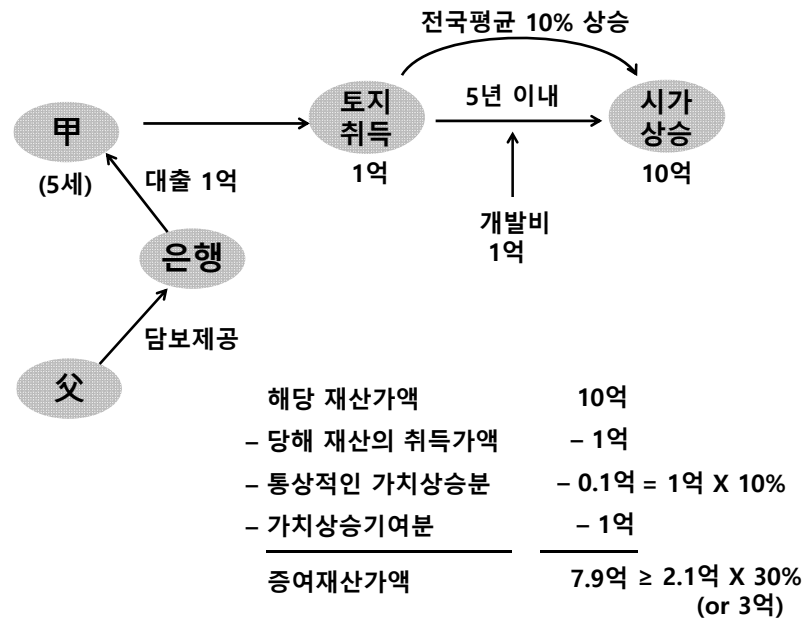


- 합산배제증여재산 (∵증여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①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 ③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
- ④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 ⑤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 ⑥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 ⑦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 ⑧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이익

(서브노트 53쪽)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이익

(서브노트 52쪽)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정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취득사유

-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받아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 또는 특수관계인 재산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 취득

- 재산가치증가사유

- ①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의 인허가 등
- ②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 기준금액

Min[(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X 30%, 3억원]

■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사전증여재산)

(서브노트 36쪽)

- 사전증여재산 합산요건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20	50	100 + 20	200 + 50

- 합산배제증여재산 → 증여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①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 ③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
- ④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 ⑤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 ⑥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 ⑦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 ⑧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증여재산공제

(서브노트 36쪽)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4)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 수령시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그룹별 10년간 공제액

	if) 6/1	if) 6/1			
배우자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삼촌	고모
700	40	60	100	20	30
(600)	(40) (20)	(60) (30)	(50)	(10)	(0)
100	0	50	50	10	30

* 합산기간 (10년) 동안 2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순차로 공제하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 공제한다.

■ 증여재산공제와 합산과세

(서브노트 37쪽)

아버지 100 증여재산가액 100 증여재산공제 (50) 과표 50 X 10% 산출세액 5 신고세액공제 (0.15) 납부세액 4.85		어머니 100 증여재산가액 100 사전증여재산 100 증여재산공제 (50) 과표 150 X 10%, 20% 산출세액 20 기납부세액공제 (5) 신고세액공제 (0.45) 납부세액 14.55		아버지 0 증여재산가액 200 증여재산공제 (50) 과표 150 X 10%, 20% 산출세액 20 신고세액공제 (0.6) 납부세액 19.4	
어머니 100 증여재산가액 100 증여재산공제 (50) 과표 50 X 10% 산출세액 5 신고세액공제 (0.15) 납부세액 4.85		어머니 100 증여재산가액 100 사전증여재산 100 증여재산공제 (50) 과표 150 X 10%, 20% 산출세액 20 기납부세액공제 (5) 신고세액공제 (0.45) 납부세액 14.55		어머니 200 증여재산가액 200 증여재산공제 (50) 과표 150 X 10%, 20% 산출세액 20 신고세액공제 (0.6) 납부세액 19.4	

■ 재해손실공제

(서브노트 37쪽, 38쪽)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증여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
: 500만원 한도(평가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공제 적용)
-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 500만원 한도
- (3) 평가심의위원회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수수료
: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서브노트 38쪽)

일반적인 경우	합산배제증여재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	이외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명의신탁 재산가액	증여의제이익	합산배제 증여재산
(-) 증여공제			(-) 3천만원
(-)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

*1.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증여세 산출세액

(서브노트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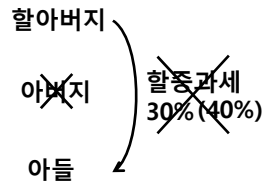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증여세 산출세액

(서브노트 38쪽, 39쪽)

-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증과세액

$$\left[\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세대를 건너뛴 상속·유증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 \times 30\% \text{ (40%*)} - \text{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right]$$

① 자녀 제외 직계비속
 ② 미성년자
 ③ 20억원 초과
 ↓
 사전증여재산가액 합산한 금액
 (상속세와 동일)

■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서브노트 39쪽)

- 증여세액의 징수유예

증여재산에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포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 문화재 자료 징수유예규정은 없음(이외는 상속세와 동일)

■ 세액공제

(서브노트 39쪽)

- 기납부세액공제

증여재산의 합산과세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세액공제

(서브노트 40쪽)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

$$\text{신고세액공제액} = \left[\begin{array}{l} \text{증여세산출세액} \\ \text{(할증과세액 포함)} \end{array} - \begin{array}{l} \text{문화재 등} \\ \text{징수유예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공제·감면} \\ \text{세액} \end{array} \right] \times 3\%$$

■ 증여세 납세절차

(서브노트 40쪽)

-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

- ① 일반적인 경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③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의 납부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세액, 공제 또는 감면되는 세액,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분납 및 연부연납 (물납은 없음)

- ① 증여세의 분납: 상속세와 동일
- ② 증여세의 연부연납: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2쪽)

- (1) 신탁이익의 증여
- (2) 보험금의 증여
- (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7) 불공정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8)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9)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2쪽)

(1)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a.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 b.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3쪽)

(2)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①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text{보험금} \times \frac{\text{수령인 아닌 자가 부담한 보험료}}{\text{총납부보험료}}$$

- ③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3쪽)

(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4쪽)

(4)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 O

- (1) 현저한 이익요건 : 거래가 - 시가 $\geq \text{Min}(\text{시가} \times 30\%, 3\text{억})$
- (2) 증여재산가액 : 차액 - 기준금액

2. 특수 X + 정당한 사유 X

- (1) 현저한 이익요건 : 거래가 - 시가 $\geq \text{시가} \times 30\%$
- (2) 증여재산가액 : 차액 - 3억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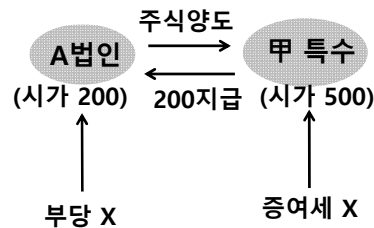
(4)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적용배제

-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으로 전환,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② 상장법인 주식으로서 주식시장에서 거래(시간외시장 매매 제외)된 경우
- ③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그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경우의 시가

상증세 : 전후 2개월 증가평균 (500)
법인세 : 거래일의 증가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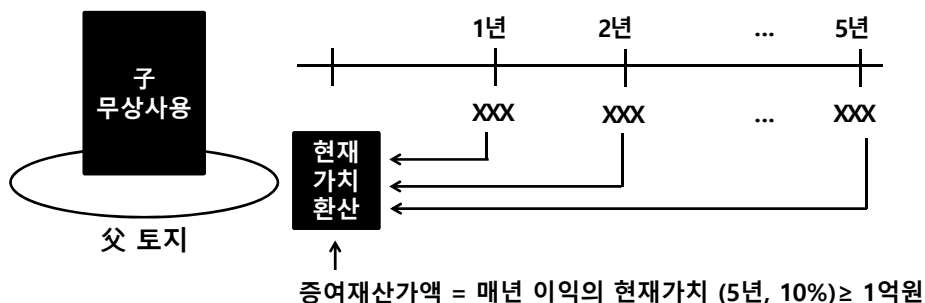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5쪽)

(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5쪽)

(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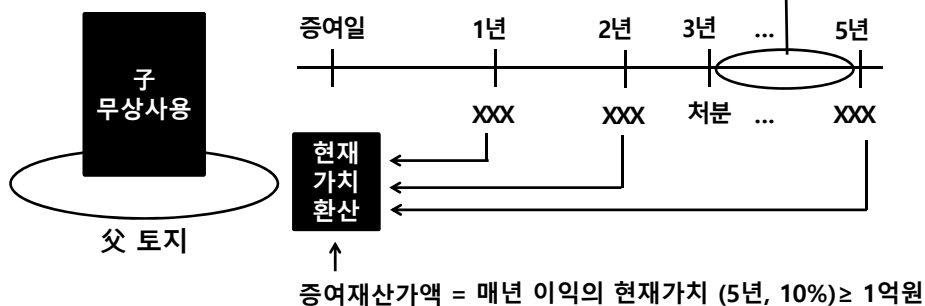
$$\text{증여재산가액} = \text{매년 이익의 현재가치 (5년, 10\%)} \geq 1\text{억원}$$

- *1.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 2.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5쪽)

(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경정 등의 청구특례

(서브노트 41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부동산 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다음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a.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b.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②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다음의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a.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 b.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6쪽)

(6) 금전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text{증여재산가액} = \text{차입금} \times \text{적정이자율} - \text{실제 지급하는 이자} \geq 1\text{천만원}$$

- *1. 적정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정이자율)
2.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경정 등의 청구특례

(서브노트 41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부동산 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다음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a.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b.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②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다음의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a.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 b.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 경정 등의 청구특례

(서브노트 41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다음의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a.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 b. a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불공정 자본거래

(법인세 서브노트 183쪽)

- 법인세와 증여세 적용 요건 비교

	법인세	증여세
1) 특수 :	특수 O	① 일반 : 특수 O ② 합병 / 저가 재배정 : 특수 O + 특수 X *합병/감자 : 대주주 (1%이상 또는 액면가 3억 이상)
2) 현저한 이익	① 일반 : 30% or 3억 이상 ② 재배정 : 요건 없음	① 일반 : 30% or 3억 이상 ② 재배정 : 요건 없음

* 불공정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하는 법인간에도 특수관계 있어야 함
(특수관계여부는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6쪽)

(7) 불공정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전환사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변칙적 증여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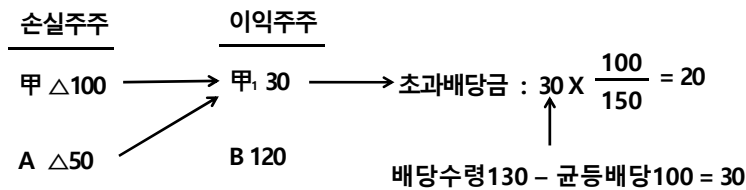
(서브노트 47쪽, 48쪽)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차등배당)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세 등이 과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①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② 초과배당금 : (배당받은 금액 - 균등배당액) × $\frac{\text{최대주주의 과소배당금액}}{\text{과소배당 주주의 모든 과소배당금액}}$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8쪽)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a. 증여세 신고기한이 소득세 신고기한 후에 도래하는 경우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b. a 이외의 경우

초과배당금액	소득세 상당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31만원 + (초과배당금액 - 5천220만원) ×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초과배당금액 - 8천800만원)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초과배당금액 - 1억5천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초과배당금액 - 3억원)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60만원 + (초과배당금액 - 5억원) × 42%
10억원 초과	3억8천460만원 + (초과배당금액 - 10억원) × 45%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9쪽)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 a. 증여세 신고기한이 소득세 신고기한 후에 도래하는 경우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 b. a 이외의 경우
-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의 계산
 - a.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 0
 - b.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 c.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경우

$$\text{Max}[\text{①}, \text{②}]$$
 - ① 초과배당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표 × 소득세 누진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누진세율
 - ② 초과배당금액 × 14%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9쪽)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 증여세액의 정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다음의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②의 증여세액이 ①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증여세 = ① - ②

- ①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 ②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 *1. 정산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 2.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3.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소득세 신고기한 후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의 정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49쪽)

(11)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기준금액 : $\text{Min}[(\text{취득가액} + \text{기업가치의 실질증가이익}) \times 30\%, 3\text{억원}]$

*2. 일정한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a.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b.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함)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50쪽)

(11)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기준금액 : $\text{Min}[(\text{취득가액} + \text{기업가치의 실질증가이익}) \times 30\%, 3\text{억원}]$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을 통하여 상장(우회상장)하는 경우로서 과세요건은 위의 경우(직상장)와 동일함

■ 변칙적 증여거래

(서브노트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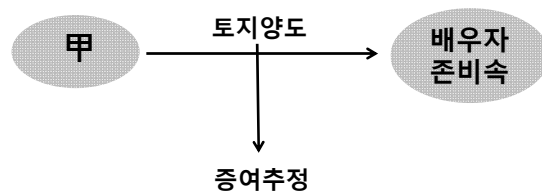
-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여추정

(서브노트 64쪽)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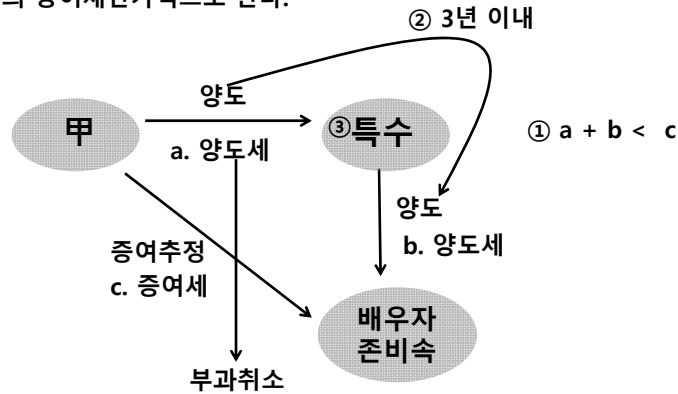


■ 증여추정

(서브노트 64쪽)

- 우회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증여추정

(서브노트 64쪽)

- 증여추정 배제

-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 ④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외시장 매매 제외)
-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서브노트 65쪽)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 증여추정
- ②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위 ①의 규정을 적용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증여추정의 배제

- ①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액 이하인 경우
- ②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③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금액 = Min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가액×20%, 2억원]

■ 증여세의 납부의무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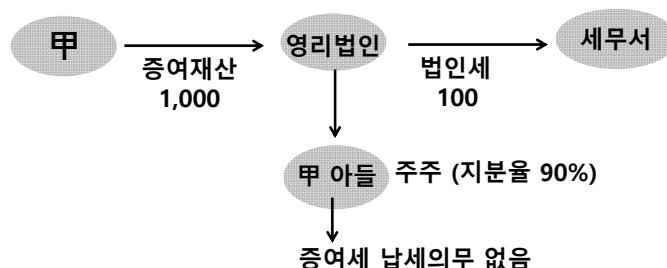
(서브노트 31쪽)

- ③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영리법인 주주의 납세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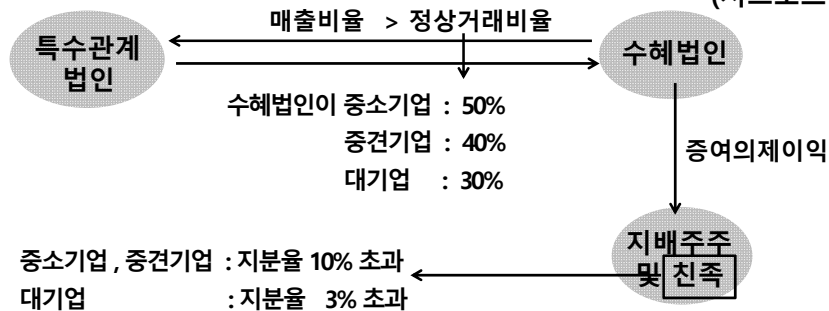
원칙 : 없음

예외 : 있음

- a.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b.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c.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
(서브노트 56쪽)



(1) 중소기업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지분율 - 10%)

(2)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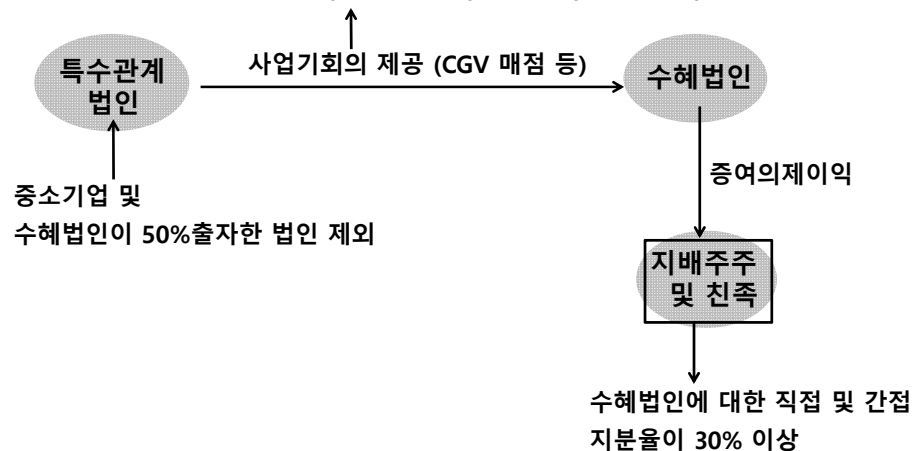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40% × $\frac{1}{2}$) × (지분율 - 10% × $\frac{1}{2}$)

(3) 대기업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지분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 떼어주기)
(서브노트 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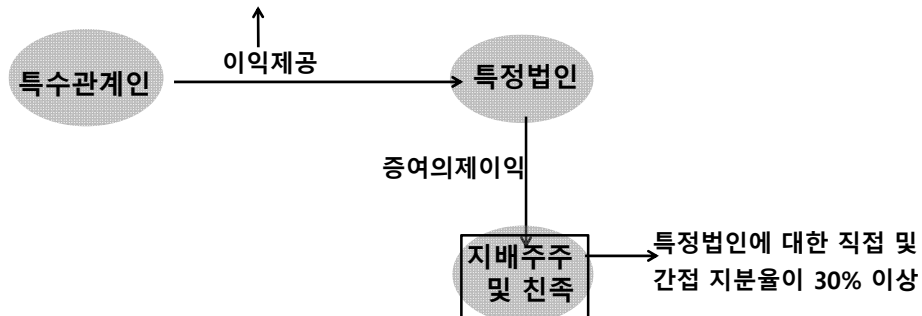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으로 제공받는 경우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서브노트 63쪽)

- ① 재산 및 용역의 무상 제공
- ② 재산 및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
- ③ 재산 및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받는 것(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 법인세해당액) × 지배주주 및 친족 지분율

* 증여의제 적용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증여세 납세절차

(서브노트 40쪽)

-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

- ① 일반적인 경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③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의 납부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세액, 공제 또는 감면되는 세액,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분납 및 연부연납

- ① 증여세의 분납: 상속세와 동일
- ② 증여세의 연부연납: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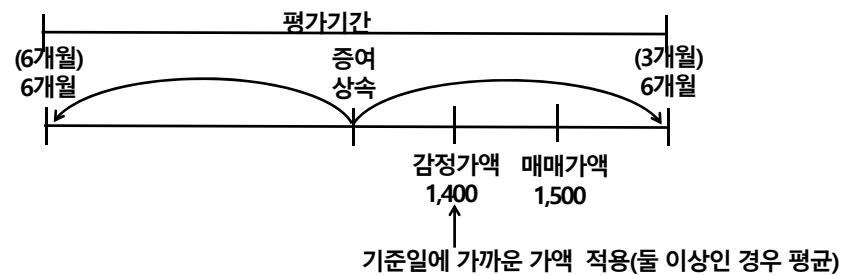
(서브노트 66쪽)

- 평가방법

1. 원칙 : 시가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

1. 시가의 정의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2. 시가에 포함되는 금액 (간주시가)
평가기간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액 (유사자산의 매매 등 가액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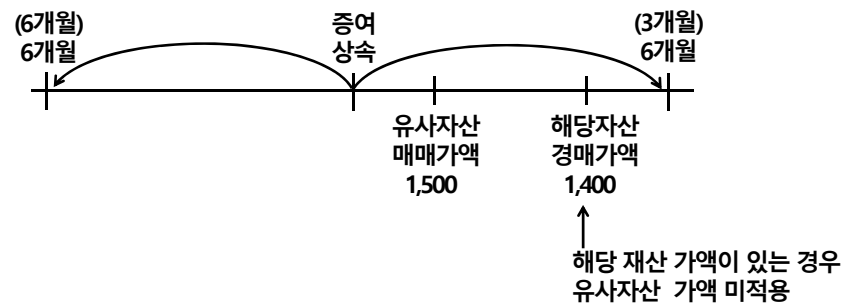


■ 평가

(서브노트 67쪽)

2. 시가에 포함되는 금액

평가기간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액 (유사자산의 매매 등 가액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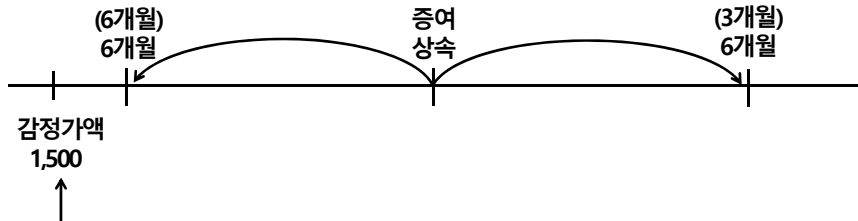


■ 평가

(서브노트 65쪽)

2. 시가에 포함되는 금액

평가기간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액 (유사자산의 매매 등 가액도 포함)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 경과후부터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 등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평가

(서브노트 68쪽)

- 저당권 설정자산 특례 : Max { ① 시가 or 보충적방법 900
② 담보채권 1,000

(사례)

Apt 시가 불분명 / 기준시가 900 / 담보대출 1,000 / 저당권 설정 1,200

- ↓
- ① 저당권,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② 양도담보재산
 - ③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
 - ④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 주식 평가

- 상장주식(서브노트 70쪽)

: 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시가)

- 비상장주식 (서브노트 73쪽)

: Max [(1), (2)]

(1) 가중평균평가액

$$\textcircled{1} \text{ 일반법인} = \frac{\text{순이익가치} \times 3 + \text{순자산가치} \times 2}{5}$$

$$\textcircled{2} \text{ 부동산 과다법인} = \frac{\text{순이익가치} \times 2 + \text{순자산가치} \times 3}{5}$$

↳ 부동산 등 50% 이상

(2) 한도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 비상장주식

(서브노트 73쪽)

: Max [(1), (2)]

(1) 가중평균평가액

$$\textcircled{1} \text{ 일반법인} = \frac{\text{순이익가치} \times 3 + \text{순자산가치} \times 2}{5}$$

$$\textcircled{2} \text{ 부동산 과다법인} = \frac{\text{순이익가치} \times 2 + \text{순자산가치} \times 3}{5}$$

↳ 부동산 등 50% 이상

(2) 한도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1. 청산절차 진행 /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
2. 사업개시전 / 개시후 3년 미만 / 휴 · 폐업중인 법인
3. 부동산 등 가액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4. 주식가액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5.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비상장주식

(서브노트 73쪽)

: Max [(1), (2)]

(1) 가중평균평가액

$$\textcircled{1} \text{ 일반법인} = \frac{\text{순손익가치} \times 3 + \text{순자산가치} \times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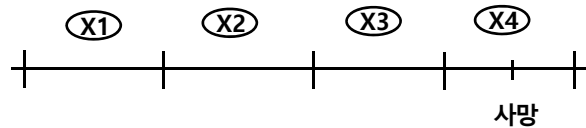
$$\textcircled{2} \text{ 부동산 과다법인} = \frac{\text{순손익가치} \times 2 + \text{순자산가치} \times 3}{5}$$

↳ 부동산 등 50% 이상

(2) 한도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 순손익가치 : $\frac{\text{주당 가중평균 순이익}}{10\%}$

$$\rightarrow \frac{\textcircled{X1} \times 1 + \textcircled{X2} \times 2 + \textcircled{X3} \times 3}{6}$$



- 비상장주식

(서브노트 73쪽, 74쪽)

: Max [(1), (2)]

(1) 가중평균평가액

$$\textcircled{1} \text{ 일반법인} = \frac{\text{순손익가치} \times 3 + \text{순자산가치} \times 2}{5}$$

$$\textcircled{2} \text{ 부동산 과다법인} = \frac{\text{순손익가치} \times 2 + \text{순자산가치} \times 3}{5}$$

↳ 부동산 등 50% 이상

(2) 한도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 순자산가치 : $\frac{\text{자산} - \text{부채}}{\text{주식수}}$

<자산 관련>

- ① 영업권 포함
- ② 선급비용, 개발비 제외
- ③ 상종세 평가액

<부채 관련>

- ① 충당금, 준비금 제외
- ② 추계액 포함

(장부가액이 보충적평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

■ 주식 평가

(서브노트 74쪽)

- 상장주식: 기준일 전후 2개월 증가 평균 (시가)

- 비상장주식 : Max [(1), (2)]

(1) 가중평균평가액

$$\textcircled{1} \text{ 일반법인} = \frac{\text{순이익가치} \times 3 + \text{순자산가치} \times 2}{5}$$

$$\textcircled{2} \text{ 부동산 과다법인} = \frac{\text{순이익가치} \times 2 + \text{순자산가치} \times 3}{5}$$

↳ 부동산 등 50% 이상

(2) 한도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중소기업 주식 제외) : 20% 가산

↳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에
당해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 보충적 평가방법

(서브노트 69쪽)

- 부동산의 평가

구 분	보충적 평가방법
(1) 토 지	① 일반지역: 개별공시지가
	② 지정지역: 개별공시지가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2) 건 물	국세청장 고시가액
(3) 주 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국세청장 지정지역 내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 일괄 고시가액

■ 보충적 평가방법

(서브노트 69쪽)

-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1)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재취득가액 등 -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2)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	재취득가액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
(3) 재고자산·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	재취득가액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
(4)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Max[①, ②] ① 2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②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기타 유형재산	재취득가액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

■ 보충적 평가방법

(서브노트 70쪽)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자산의 평가특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자산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액 = Max [①, ②]

① 위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② 임대보증금 + $\frac{1\text{년 간 임대료}}{12\%}$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의 경우에는 위 ②의 금액을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 +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1+3\%)^n}$

n :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보충적 평가방법

(서브노트 74쪽)

- 유가증권

(1) 국공채 및 사채

- ① 상장 국공채 및 사채 : $\text{Max}[a, b]$
 - a. 평가기준일 이전 2월 증가평균액
 - b.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 증가

② 이외의 경우

- a.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매입가액 + 미수이자상당액
- b. 이외의 경우 : 처분예상가액

(5) 예금 등 : 평가기준일 현재의 예입총액 + 경과기간 미수이자 - 원천징수세액

- 무체재산권

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 ① 재산의 취득가액 -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 보충적 평가방법

(서브노트 76쪽)

- 기타 조건부권리

- (1) 조건부 권리 :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가액
-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 (3) 소송중의 권리 :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 보충적 평가방법

(서브노트 76쪽)

- 기타 조건부권리

(4)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Max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 일시금, 아래 평가액)

①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가액

②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a.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가액 - b산식 금액

b.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

: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이익의 수익} - \text{원천징수세액상당액}}{(1+3\%)^n}$$

n :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보충적 평가방법

(서브노트 77쪽)

- 기타 조건부권리

(5) 정기금을 받을 권리 : Max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 일시금, 아래 평가액)

① 유기정기금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② 무기정기금 : 1년분 정기금×20배

③ 종신통정기금 :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기대여명의 연수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

(6) 가상자산

①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② ①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 가상자산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보충적 평가방법

(서브노트 77쪽)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시가에 의한 평가방법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을 포함)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